

[일본] 아크릴계(アクリル系) 지정 용어 변경

소비자위원회 (2021. 08. 05.)



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개정에 따라 지정용어 「アクリル系」가 「モダクリル」로 변경됩니다. 이번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며, 1년간(시행~2022년 12월 31일까지)은 경과조치기간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.

• 개정 취지

2020년 11월 「섬유용어」에 관한 일본산업규격(JIS L0204-2 섬유용어(원료부문)-제2부 : 화학섬유(이하 JIS로 표기))의 개정에 따라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제3조 제 1항 「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(이하 「섬유규정」으로 표기)」에 규정된 조성표시를 표시해야하는 일부사항에 대해 소정의 개정을 실시합니다.

• 개정 내용

JIS 개정에 의해 「アクリル系」가 「モダクリル」로 변경 됨에 따라 섬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용어 「アクリル系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「アクリル系」를 「モダクリル」로 변경합니다.

• 개정 스케줄

현재(2021년 9월)는 의견청취 기간에 있으며, 이후 약 1~2개월 간 법령 개정 수속을 거쳐 2022년 1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. 또한, 시행 후 1년간은 경과조치기간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.



• 경과 조치 기간에 대한 이해

- ① 기간 종료 후, 표시사업자는 개전전 표시(예 : アクリル系)를 한 제품을 출하할 수 없습니다.
- ② 기존에 소매점의 점두 등에서 유통하고 있는 재고 상품 등은 제품을 회수하여 표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③ 기간 종료 후, 「재고품」이나 「개정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제품」 등은 사업자에게 개별로 사정을 설명하여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

❖ [참고] 「아크릴」과 「모다크릴(아크릴系)」

- 폴리아크릴리트릴계 합성섬유(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라고도 함)는 화학섬유 중 가장 양모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, 포근하고 따뜻한 감촉의 부드럽고 가벼운 섬유로, 스웨터 등의 니트제품, 담요나 가정용 카펫 등에 널리 사용됨.
- 섬유의 단면을 편평하게하여 천연모피의 효과를 주거나 보풀이 잘 생기지않고 내열성을 향상시킨 타입, 항균 방취 성능이나 정전기 방지 등의 기능성을 부여한 타입 등 다양함
- 폴리아크릴리트릴계 합성섬유는 「아크릴」과 「모다크릴」로 구분되며, 아크릴로니트릴을 질량대비 85 %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이 「아크릴」이고, 35 %~85 %만 포함하는 것이 「모다크릴」임.
- 「모다크릴」은 염화비닐이나 염화비닐리덴이 함께 중합되어 있기때문에 난연성이 뛰어나, 담요, 카펫, 담요 등의 난연제품이나 가발 등에 주로 사용.

❖ 「모다크릴(아크릴系)」의 주된 용도

- 의류용 : 방화작업복, FUR(인공모피)
- 가정용 : 모포, 카펫, 러그, 커튼, 의자의 원단, 시트 등의 침구
- 그 외: 가발